

청주전파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

청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-7호

청주전파관리소에서 공무직 근로자(조리업무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8일

청주전파관리소장

1. 채용 개요

채용 분야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	근무지
공무직 (구내식당 조리업무)	1명	계약체결일 ~ 정년 (무기계약직)	청주전파관리소 (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)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□ 공통 자격

- 18세 이상인 자로(2006.12.31. 이전 출생자) 공고일(2024.3.28.) 기준 인사 관리 규정상 정년(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
-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
- 식품위생법 제40조(건강진단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-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

<p>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p> <p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p> <p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p> <p>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</p> <p>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</p> <p>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</p> <p>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</p>
--

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

구분	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공무직 (조리업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응시자격)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- (우대사항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(한식, 중식, 양식, 일식) 소지자,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(실무경력 1년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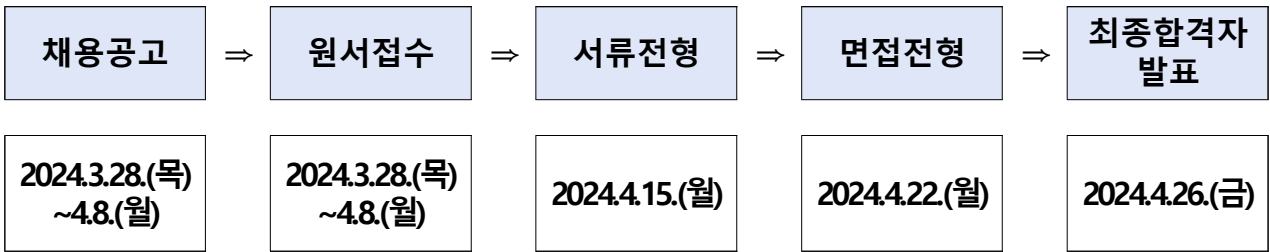
- 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- ※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
가점 사항 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구분		부가 점수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

※ 중복 가점은 불가함

3. 채용 절차



○ 서류전형 방법

채용분야	내용				
공무직 (조리업무)	○ 적극적 서류전형(5배수)				
	계	평가점수			가점 (사회형평)
		자기소개서, 입사지원서	지원분야 경력	우대사항 (자격증)	
	100점 + 가점	60	30	10	3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-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: 5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다만 지원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(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)으로 선발한다. 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 - 서류전형 결과(면접전형 대상자) 발표 : 2024.4.1.(월) 홈페이지 공고 				

○ 면접전형 방법

채용분야	내용
공무직 (조리업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정요소를 상(10점), 중(6점), 하(2점)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정요소 : 1. 근로자로서 정신자세,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○ 불합격 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 ○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

○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	최종합격자	예비합격자(운영기한)
공무직(조리업무)	1명	2명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)
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·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
- ※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 심의기구 심의·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4. 전형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 기간	2024.3.28.(목) ~ 4.8.(월)	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, 나라일터
원서접수 기간	2024.3.28.(목) ~ 4.8.(월)	E-mail 및 등기우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	2024.4.17.(수)	홈페이지 공고 (개별 별도 통보 없음)
면접전형	2024.4.22.(월)	
최종합격자 발표일	2024.4.26.(금)	홈페이지 공고 (개별 별도 통보 없음)
채용 예정일	2024.5.1.(수)	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

※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)

5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□ 원서 접수 기간 : 2024.3.28.(목) ~ 4.8.(월)

○ 원서 접수 방법 :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

*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함

- 등기우편 접수 주소 : (28567)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,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공무직근로자 채용 담당

-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 주소 : lssoon@korea.kr

○ 응시자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							
원서접수 시	- 입사지원서(응시원서)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,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※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							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~ 면접전형 당일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제출대상</th> <th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격자 전원</td> <td>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</td> </tr> <tr> <td>가점 대상자 (사회형평)</td> <td>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 이민자)</td> </tr> <tr> <td>우대사항 대상자</td> <td>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,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※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제출대상	제출서류	합격자 전원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	가점 대상자 (사회형평)	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 이민자)	우대사항 대상자	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,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※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	제출대상	제출서류							
	합격자 전원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							
	가점 대상자 (사회형평)	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 이민자)							
우대사항 대상자	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,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※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								
최종합격자 발표 후	-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, 공정채용 확인서, 채용신체검사서,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※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								

※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

※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(자격·우대사항 증빙서류 등)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

6. 근무조건 등

채용 분야	계약기간	근무지	근무시간	보수
공무직 (구내식당 조리업무)	계약체결일 ~ 정년 (무기계약직)	청주전파관리소 (충북 청주시)	1일 8시간, 주5일 근무	일급 78,880원, 급식비 별도, 명절휴가비 연 2회 지급, 4대 보험 가입, 주휴수당, 연차유급휴가, 특별휴가 등

※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

7. 유의사항

□ 채용서류 반환 관련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 - ※ 다만,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-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
-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 - ※ 단,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

□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(24.4.8.)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*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 - 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포함, 유효기간 내)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(043-261-5815)에게 문의

- 붙임 1. 입사지원서 1부.
 2. 자기소개서 1부.
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 4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
 5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. 끝.

<별지 4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년 월 일

생년월일

지 원 자

(서명)

<별지 5>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청주전파관리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